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제 시행규칙을 두지 않는 기관의 경우 종전에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직제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24. ~ 3.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국가교육위원회 직제」의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직급별 정원”을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국가안보실 직제」의 개정)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직급별 정원”을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별표 2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제4조(「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2(중전의 별표 3)를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제5조(「대통령비서실 직제」의 개정)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6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정원중”을 “정원 중”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중전의 별표 1)를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7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의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를 “정원은 별표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중전의 별표 1)를 별지 10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8조(「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 11과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1의4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3(종전의 별표 1의4)을 별지

12와 같이 한다.

제9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의 개정)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 13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1]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관련)

총계	31
정무직 계	3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2
특정직 계	11
장학관·4급일반직 또는 교육연구관 이하	11
일반직 계	17
고위공무원단	1
4급 이하	16

[별지 2]

[별표]

국가안보실 공무원 정원표(제7조제1항 관련)

총계	43
정무직 계	3
국가안보실장(장관급)	1
국가안보실 차장(차관급)	2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계	4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5
3급 또는 4급 상당 이하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25

[별지 3]

[별표 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205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3
일반직 계	200
고위공무원단	7
3급 또는 4급 이하	193
경찰공무원 계	1
경감 이하	1

[별지 4]

[별표 2의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206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3
일반직 계	201
고위공무원단	7
3급 또는 4급 이하	194
경찰공무원 계	1
경감 이하	1

[별지 5]

[별표 3]

인권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4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43
일반직 계	43
4급 이하	43

[별지 6]

[별표 1]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정원표(제7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691
정무직 계	1
처장(차관급)	1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계	431
1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1
2급	4
2급 또는 3급	2
3급	18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2
3급·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이하	404
일반직 또는 특정직 계	259
5급 이하	259

[별지 7]

[별표 2]

대통령경호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47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계	35
2급	1
3급	2
3급·4급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이하	32
일반직 계	12
6급 이하	10
임기제 교수요원(가급)	2

[별지 8]

[별표]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총계	443
정무직 계	12
대통령비서실장(장관급)	1
정책실장(장관급)	1
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차관급)	10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계	43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79
3급 또는 4급 상당 이하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352

[별지 9]

[별표]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46
일반직 계	4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고위공무원단	1
4급 이하	39
전문직공무원	5

[별지 10]

[별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77
정무직 계	1
사무처장(차관급)	1
별정직 계	2
7급 상당 이하(비서)	2
일반직 계	74
고위공무원단	3
3급 또는 4급 이하	71

[별지 11]

[별표 1의2]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234
정무직 계	5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차관급)	4
별정직 계	1
7급 상당 이하	1
일반직 계	227
고위공무원단	6
3급 또는 4급 이하	219
전문경력관	2
경찰공무원 계	1
경감 이하	1

[별지 12]

[별표 1의3]

방송통신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의2제1항 본문 관련)

총계	45
일반직 계	45
4급 이하	45

[별지 13]

[별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관련)

총계	23
일반직 계	2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
3급 또는 4급 이하	19
경찰공무원 계	3
경정 이하	3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무처) ① (생략)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u>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③ (생략)	제4조(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보한다.</u>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정원-----.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③ · ④ (생략)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 으로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	--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u> <u>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u>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u>직급별 정원</u> 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운전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u>정원</u> ----- ----- ----- ----- -----
② <u>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u>	② <u>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u>

③・④ (생략)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	--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② (생략)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u>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u> <u>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u> <u>로 정한다.</u>
--	--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제10조(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u>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u> <u>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u>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u>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u> <u><신 설></u> ② <u>별표 1의</u>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u>정원중</u> 5급 5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5조제3항 및 <u>별표 1</u> 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역조사실장 및 덤핑조사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 ----- ----- <u>별표</u> <u>와 -----</u> . <u>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u> ② <u>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u> ③ <u>별표</u> ----- ----- <u>정원 중</u> ----- ----- ----- ----- -----.	제10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u>별표</u> -----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② 사무처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사무처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사무처) ① (생략)	제3조의2(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u>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u>	② ----- ----- ----- <u>보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u>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제4조의2(대변인) ① ----- ----- ----- <u>보한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u>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제5조(기획조정관) ① ----- ----- ----- <u>보한다.</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방송정책국) ① 방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u>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제6조(방송정책국) ① ----- ----- ----- <u>보한다.</u>

다.

② ~ ⑦ (생략)

제7조(이용자정책국) ①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 ⑧ (생략)

제8조(방송기반국) ① 방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 ⑦ (생략)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2에 따른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두는 경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자정책국) ① -----

----- 보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방송기반국) ① -----

----- 보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우에는 별표 1의3과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10조의2(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3에 따른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u>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u>	<u>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u>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9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u>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9